#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508 발의연월일: 2024. 8. 1.

발 의 자:김성환·김정호·허성무

윤종오 • 백승아 • 박지혜

이소영 · 서왕진 · 권향엽

황정아 · 최민희 · 허 영

김남근 • 김기표 • 차지호

복기왕 · 정진욱 · 김 윤

위성곤 · 오세희 · 전현희

강경숙 • 김원이 • 김동아

이재관 · 남인순 · 김영배

박희승 · 정태호 · 윤건영

양부남 • 문금주 • 김영환

박정현 • 이광희 • 유준병

이재강 • 역태영 • 송재봉

박범계 • 문대림 • 임미애

박홍근 · 임광현 · 안호영

김태년 • 추미애 • 김용만

황명선 · 이기헌 의원

(50인)

####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화석연료 등을 기반으로 하는 신에너지(new energy)와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를 같은 법률로 규정하여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고 있음. 신에너지는 1970년대 석유 파동 이후 석유 대체에너지 마련을 위해 만들어진 체계로, 이는 온실가스를 배출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와 혼용하여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국제에너지기구(IEA) 등도 재생에너지를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재생가능한 비화석 에너지원'으로 정의하여 엄격히 분리하고 있음.

그동안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가 혼용하여 사용됨에 따라, 신에너지가 재생에너지인증서(REC)를 발급받는 문제가 생기고, 재생에너지 관련 통계에도 신에너지가 포함되어 혼선을 가져오는 등 부작용이 있음.

이에 석탄가스화 복합발전(IGCC) 등 신에너지는 현행법에서 삭제하고, 연료전지·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은 재생에너지를 지원하는 에너지 설비로 규정하여 재생에너지 관련 체계를 국제기준에 맞추어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법률의 제명을 「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으로 변경함(안 제명).
- 나. 재생에너지와 이를 활용하는 전력설비를 법령으로 규정함(안 제2 조).

법률 제 호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의"로 한다.

제1조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각각 "재생에너지"로 한다.

제2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설비"(이하 "신·재생에너지 설비"라 한다)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이하 "신·재생에너지"라 한다)를 생산 또는 이용하거나 신·재생에너지의"를 "재생에너지 설비"란 재생에너지를 생산 또는 이용하거나 재생에너지의"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을 "다음 각 목의 설비 및 그 부대설비를"로 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 중 "신·재생에너지"를 각각 "재생에너지"로 한다.

- 가. 수소에너지 설비
- 나. 연료전지 설비
- 다. 태양에너지 설비
- 라. 풍력 설비
- 마. 수력 설비

- 바. 해양에너지 설비
- 사. 지열에너지 설비
- 아. 바이오에너지 설비
- 자. 폐기물에너지 설비
- 차. 수열에너지 설비
- 카. 전력저장 설비
- 타.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렁으로 정하는 설비

제4조제1항 및 제2항 중 "신·재생에너지"를 각각 "재생에너지"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를 "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로, "신·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신·재생에너지원별"을 "재생에너지원별"로 하며, 같은 항 제3호·제6호·제7호 및 제8호 중 "신·재생에너지"를 각각 "재생에너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신·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신·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신·재생에너지"를 각각 "재생에너지"로 한다.

제7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신·재생에너지"를 각각 "재생에너지"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를 "(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신·재생에너지의"를 "재생에너지의"로,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를 "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로 하며, 같

은 조 제2항제2호·제3호 및 제4호 중 "신·재생에너지"를 각각 "재생에너지"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중 "신·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한다.

제10조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6호까지 중 "신·재생에너지"를 각각 "재생에너지"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중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재생에너지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신·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재생에너지"를 각각 "재생에너지"로,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재생에너지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신·재생에너지"를 각각 "재생에너지"로 한다.

제12조의5의 제목 중 "신·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재생에너지"를 각각 "재생에너지" 로,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재생에너지산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및 같은 조 제5항·제6항 중 "신·재생에너지"를 각각 "재생에너지"로 한다.

제12조의6의 제목 및 제1항 중 "신·재생에너지"를 각각 "재생에너지"로 한다.

제12조의7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외의 부분 전단·후단, 같은 항 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6항·제8항 중 "신·재생에너지"를 각각 "재생에너지"로 한다.

제12조의8제1항제1호 중 "신·재생에너지센터"를 "재생에너지센터"로 한다.

제12조의11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신·재생에너지"를 각각 "재생에너지"로 한다.

제12조의12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신·재생에너지"를 각각 "재생에너지"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신·재생에너지"를 각각 "재생에너지"로 한다.

제13조의2제1항 중 "신·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중 "신·재생에너지"를 각각 "재생에너지"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신·재생에 너지"를 각각 "재생에너지"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신·재생에너지"를 각각 "재생에너지"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재생에너지"를 각각 "재생에너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신·재생에너지센터"를 "재생에너지센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신

• 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한다.

제23조의2의 제목 중 "신·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신·재생에너지"를 각각 "재생에너지"로 한다. 제23조의4제1항제1호 중 "신·재생에너지센터"를 "재생에너지센터"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신·재생에너지"를 각각 "재생에너지"로 한다.

제26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중 "신·재생에너지"를 각각 "재생에너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신·재생에너지센터"를 "재생에너지센터"로, "신·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신·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제4호·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신·재생에너지"를 각각 "재생에너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신·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한다.

제28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제2호·제3호 및 제4호 중 "신·재생에 너지"를 각각 "재생에너지"로 한다.

제29조 중 "신ㆍ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한다.

제30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신·재생에너지"를 각각 "재생에너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신·재생에너지"를 각각 "재생에너지"로 한다.

제30조의2의 제목 중 "신·재생에너지사업자"를 "재생에너지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신·재생에너지"를 각각 "재생에너지"로, "신·재생에너지사업자"를 "재생에너지사업자"로,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재생에너지사업"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신·재생에너지사업"을 각각 "재생에너지사업"으로 한다.

제30조의3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신·재생에너지"를 각각 "재생에너지"로 한다.

제30조의4의 제목, 같은 조 제1항·제2항·제3항 및 제6항 중 "신·재생에너지"를 각각 "재생에너지"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재생에너지"를 각각 "재생에너지"로, "신·재생에너지센터"를 "재생에너지센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제2호·제4호·제7호부터 제11호까지·제13호·제14호·제15호의 및 제18호 중 "신·재생에너지"를 각각 "재생에너지"로 한다.

제33조제5호 중 "신·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구성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가 재생에너지와 관련하여 심의를 거친 사항은 이 법에 따른 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3조(재생에너지센터의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재생에너지센터는 종전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31 조에 따라 설립된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업무 중 재생에너지에 관련된 소관 업무를 승계한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센터가 행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재생에너지센터가 행한 행위로 본다.
- 제4조(신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에너지 공급자로서 종전의 제12조의7에 따라 공급인증서를 발급 받거나 종전의 제17조에 따라 발전차액을 지원 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효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계속하여 공급인증서를 발급하거나 발전차액을 지원한다.
-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이용 • 보급 촉진법 촉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에너지 및 제1조(목적) -----재생에너지-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 용 · 보급 촉진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에너 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추진 함으로써 환경의 보전, 국가경 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삭 제> 1. "신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 | 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 소・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 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을 말한다.

가. 수소에너지

나. 연료전지

- 다.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 라. 그 밖에 석유·석탄·원
  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
  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에너지
- 2. (생략)
-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이하 "신·재생에너지 설비"라 한다)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재생에너지"라 한다)를 생산 또는이용하거나 신·재생에너지의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설비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신</th>
 설>

 <신</td>
 설>

 <신</td>
 설>

- 2. (현행과 같음)
- 3. --재생에너지 설비"란 재생 에너지를 생산 또는 이용하거 나 재생에너지의----------다음 각 목의 설비 및 그 부대설비를-----.

가. 수소에너지 설비나. 연료전지 설비다. 태양에너지 설비

- < 신</td>
   설>

   < 신</td>
   설>
- 4. "<u>신·재생에너지</u> 발전"이란 <u>신·재생에너지</u>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 다.
- 5.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또는 같은 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로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4조(시책과 장려 등) ① 정부는 제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의 촉진에 관한 시 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공 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u>라. 풍덕 설비</u>
마. 수력 설비
바. 해양에너지 설비
사. 지열에너지 설비
아. 바이오에너지 설비
자. 폐기물에너지 설비
차. 수열에너지 설비
카. 전력저장 설비
타.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
4 재생에너지
생에너지
•
ا المال
5 <u>재생에너지</u>
<u>재생</u>
<u>에너지</u>
4조(시책과 장려 등) ①
-재생에너지
· ②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기업체 등의 자발적인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장려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산업 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제8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절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한다.

- ② 기본계획의 계획기간은 10 년 이상으로 하며, 기본계획에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 1. (생략)
- 2. <u>신·재생에너지원별</u> 기술개 발 및 이용·보급의 목표
- 3. 총전력생산량 중 <u>신·재생에</u> <u>너지</u> 발전량이 차지하는 비율 의 목표
- 4. 5. (생략)

<u>재생에너지</u>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u>재생에너지정책심의</u>
<u>회재생에너지</u> -
②
<u>.</u>
1. (현행과 같음)
2. <u>재생에너지원별</u>
3재생에너지
4.•5. (현행과 같음)

- 6. 신·재생에너지 기술수준의 평가와 보급전망 및 기대효과 7.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지원 방안 8. 신·재생에너지 분야 전문인
- 8. <u>신·재생에너지</u> 분야 전문인 력 양성계획
- 9. 10. (생략)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동향, 에너지 수요 · 공급 동향의 변 화,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 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8조에 따른 신·재생에너 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연차별 실행계획) ① 산업 저 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에 서 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 여 신ㆍ재생에너지의 종류별로 신 ·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 • 보급과 신 • 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한 전기의 공급에 관 한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 라 한다)을 매년 수립 · 시행하

6. <u>재생에너지</u>
7. <u>재생에너지</u>
8. <u>재생에너지</u>
9.·10. (현행과 같음) ③재생
<u>에너지</u>
<u>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u>
세6조(연차별 실행계획) ①
-재생에너지재생에
<u> </u>
<u>재생에너지</u>

여야 한다.

#### ②·③ (생 략)

제7조(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등에 관한 계획의 사전협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 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자가 신·재생에너지 기 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려면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 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 하여야 한다.

제8조(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 ①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중요 사 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 상자원부에 신·재생에너지정 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 다)를 둔다.
-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생략)
- 2. <u>신·재생에너지</u>의 기술개발및 이용·보급에 관한 중요사항
- 3. <u>신·재생에너지</u> 발전에 의하

②·③ (현행과 같음)
제7조(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등에
관한 계획의 사전협의)
재생에너지
<u>/    0                                 </u>
•
제8조(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①
재생에너지의
<u> 게경에 되지ㅋ</u>
ا د الم الد الع
<u>재생에너지</u>
<u>정책심의회</u>
<u>.</u>
②
, 4 (=1 =1 =1 =1 => )
1. (현행과 같음)
2. <u>재생에너지</u>

- 여 공급되는 전기의 기준가격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 4. <u>신·재생에너지</u> 이용·보급 에 필요한 관계 법령의 정비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5. (생략)
- ③ (생략)
- 제9조(<u>신·재생에너지</u>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사업비의 조성) (생 략)
- 제10조(조성된 사업비의 사용)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조성된 사업비를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 1. <u>신·재생에너지</u>의 자원조사, 기술수요조사 및 통계작성
  - 2. <u>신·재생에너지</u>의 연구·개발 및 기술평가
  - 3. (생략)
  - 4. <u>신·재생에너지</u> 공급의무화 지원
  - 5. <u>신·재생에너지</u> 설비의 성능 평가·인증 및 사후관리
  - 6. <u>신·재생에너지</u> 기술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 7. <u>신·재생에너지</u> 분야 기술지 도 및 교육·홍보

 4. <u>재생에너지</u>
5.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9조( <u>재생에너지</u>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사업비의 조성)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제10조(조성된 사업비의 사용)
  1. <u>재생에너지</u>
<ol> <li>재생에너지</li> <li>. 재생에너지</li> <li>. (현행과 같음)</li> <li>. 재생에너지</li> </ol>
5. <u>재생에너지</u> 6. <u>재생에너지</u>
7. <u>재생에너지</u>

- 8. <u>신·재생에너지</u> 분야 특성화 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 육 성
- 9. <u>신·재생에너지</u> 분야 전문인 력 양성
- 10. <u>신·재생에너지</u> 설비 설치기업의 지원
- 11. <u>신·재생에너지</u> 시범사업 및 보급사업
- 12. <u>신·재생에너지</u> 이용의무화 지원
- 13. <u>신·재생에너지</u> 관련 국제 협력
- 14. <u>신·재생에너지</u> 기술의 국 제표준화 지원
- 15. <u>신·재생에너지</u> 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 지원
- 16. 그 밖에 <u>신·재생에너지</u>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위 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제12조(<u>신·재생에너지사업</u>에의 기 등자권고 및 <u>신·재생에너지</u> 이용의무화 등) ① 산업통상자 원부장관은 <u>신·재생에너지</u>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

8. <u>재생에너지</u>
9. <u>재생에너지</u>
10. <u>재생에너지</u>
11. <u>재생에너지</u>
12. <u>재생에너지</u>
13. <u>재생에너지</u>
14. <u>재생에너지</u>
15. <u>재생에너지</u>
16 <u>재생에너지</u>
제12조(재생에너지사업에의 투자
권고 및 <u>재생에너지</u> 이용의무
화 등) ①
<u>재생에너지</u>

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면 에너지 관련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제10조 각 호 의 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에 투자 또는 출연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 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 진하고 신·재생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축· 중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계 시 산출된 예상 에너지사용량의 일정 비 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는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신·재생에너지 설 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할 수 있다.

- 1. ~ 6. (생략)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u>신·</u> <u>재생에너지의</u> 활용 여건 등을 고려할 때 <u>신·재생에너지</u>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

②재생
<u> </u>
에너지
<u>재생에너지산업</u>
에너지
<del>-''-'-'</del> 재생에너
<u>* 11 0 11 * 1</u>
<u> </u>
<b>,</b>
1. ~ 6. (현행과 같음)
③채생
에너지
<u>재생에너지</u>

정되는 공장·사업장 및 집단 주택단지 등에 대하여 <u>신·재</u> <u>생에너지</u>의 종류를 지정하여 이용하도록 권고하거나 그 이 용설비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2조의5(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보급을 촉진하고 신·재생에 너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 하 "공급의무자"라 한다)에게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의무 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 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다.

## 1. ~ 3.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공급의무자가 의무적으로 <u>신·재생에너지</u>를 이용하여 공급하여야 하는 발 전량(이하 "의무공급량"이라 한 다)의 합계는 총전력생산량의 25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연 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재생에너지</u>
<u>.</u>
제12조의5( <u>재생에너지</u> 공급의무
화 등) ①
재생에너지
<u>- 11 O 11 1 T C D</u>
재생
에너지
1. ~ 3. (현행과 같음)
②
<u>재생에너지</u>
,

- 이 경우 균형 있는 이용·보급이 필요한 <u>신·재생에너지에</u>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의무공급량 중 일부를 해당 <u>신·재생에너지</u>를이용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다. ③·④ (생략)
- ⑤ 공급의무자는 제12조의7에 따른 <u>신ㆍ재생에너지</u> 공급인증 서를 구매하여 의무공급량에 충당할 수 있다.
-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 항에 따른 공급의무의 이행 여 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급의 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제5항에 따라 구매하여 의무공급량에 충당하거나 제12 조의7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⑦ (생략)

제12조의6(<u>신·재생에너지</u> 공급 저불이행에 대한 과징금)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급의무자가 의무공급량에 부족하게

- <u>재생에너지</u>
개
<u>생에너지</u>
· ③·④ (현행과 같음)
⑤
재생에너지
6
<u>재</u>
<u>생에너지</u>
<u>.</u>
⑦ (현행과 같음)
ll12조의6( <u>재생에너지</u> 공급 불이
행에 대한 과징금) ①
<u>재생에</u>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 너지를 공급한 경우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부족분에 제12조의7에 따른 신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해 당 연도 평균거래 가격의 100 분의 150을 곱한 금액의 범위 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제12조의7(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 등) ① 신ㆍ재생에너지 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한 자(이하 "신·재생에너지 공급 자"라 한다)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 한 에너지 공급의 증명 등을 위하여 지정하는 기관(이하 "공급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부터 그 공급 사실을 증명하는 인증서(전자문서로 된 인증서 를 포함한다. 이하 "공급인증 서"라 한다)를 발급받을 수 있 다. 다만, 제17조에 따라 발전 차액을 지원받은 신 · 재생에너 지 공급자에 대한 공급인증서 는 국가에 대하여 발급한다.

<u>너지</u>
재생에너지
<u>///////</u>
<u>.</u>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의7( <u>재생에너지</u> 공급인증
서 등) ① <u>재생에너지</u>
키 채 에 나 기
<u>재생에너지</u>
<u>재</u>
<u>생에너지</u>
<u>재생에너지</u>

- ② (생략)
- ③ 공급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u>신·</u>
  재생에너지의 종류별 공급량 및 공급기간 등을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기재사항을 포함 한 공급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균형 있는 이용 ·보급과 기술개발 촉진 등이 필요한 <u>신·재생에너지</u>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 공급량에 가중치를 곱한 양을 공급량으로 하는 공급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 1. <u>신·재생에너지</u> 공급자
- 2. <u>신·재생에너지</u>의 종류별 공 급량 및 공급기간
- 3. (생략)
- ④・⑤ (생략)
-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른 신·재생에너지와의 형평을 고 려하여 공급인증서가 일정 규 모 이상의 수력을 이용하여 에 너지를 공급하고 발급된 경우 등 산업통상자원부렁으로 정하 는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거래

② (현행과 같음)
③
재생
에너지
생에너지
<u>.</u>
1. 재생에너지
2. 재생에너지
3. (현행과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 <b>_</b> , ,
④・⑤ (현행과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⑥

시장에서 해당 공급인증서가 거래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⑦ (생 략)

- ⑧ 신·재생에너지 공급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인증서의 발급을 제한 할 수 있다.
- 제12조의8(공급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급인증서 관련 업무를 전문 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공급인증서의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공급인증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1. 제31조에 따른 <u>신·재생에너</u> 지센터
  - 2. · 3. (생략)
  - ②·③ (생 략)
- 제12조의11(<u>신·재생에너지</u> 연료 품질기준) 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u>신·재생에너지</u> 연료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연

⑦ (현행과	같음)		
⑧ 재생여	<u>] 너지</u>		- <u>재생</u>
<u>에너지</u>			
제12조의8(공	급인증기	관의	지정
등) ①			
1	ス	내생에너	기세
터			
 2.・3. (현형	생과 같음)	)	
②·③ (현	행과 같음	-)	
제12조의11( <u>조</u>	H생에너지	<u></u> 연료	도 품
- 질기준) ①			
채생에	너지	재생	네네너
<u> </u>			

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이용하여 제조한 것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기준을 정할 수 있다. 대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품질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 ② (생략)
- ③ 제1항에 따른 신·재생에너 지 연료를 제조·수입 또는 판 매하는 사업자(이하 "신·재생 에너지 연료사업자"라 한다)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품질기준을 정한 경우에 는 그 품질기준에 맞도록 신· 재생에너지 연료의 품질을 유 지하여야 한다.

제12조의12(<u>신·재생에너지</u> 연료 저품질검사) ① <u>신·재생에너지</u> 연료사업자는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u>신·재생에너지</u> 연료가 제12조의11제1항에 따른 품

② (현행과 같음)
③
<u>재생에너지</u>
재생에너지
제12조의12( <u>재생에너지</u> 연료 품
질검사) ① <u>재생에너지</u>
<u>재생에너지</u>

질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재생에너지 품질검사기관 (이하 "품질검사기관"이라 한 다)의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생 략)

제13조(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인증 등) ①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산업표준화 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의 인 증(이하 "설비인증"이라 한다) 을 받을 수 있다.

#### ② • ③ (생 략)

제13조의2(보험·공제 가입) ①
제13조에 따라 설비인증을 받은 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결함으로 인하여 제3자가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 ② (생 략)

제17조(<u>신·재생에너지</u> 발전 기준가격의 고시 및 차액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u>신·</u>
<u>재생에너지</u> 발전에 의하여 공

재생에너지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 <u>재생에너지</u> 발전 기준가 격의 고시 및 차액 지원) ① - <u>재생에너</u>

급되는 전기의 기준가격을 발 전원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가 격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준가격의 산정기준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 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하여 공 급한 전기의 전력거래가격 (「전기사업법」 제33조에 따 른 전력거래가격을 말한다)이 제1항에 따라 고시한 기준가격 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전기를 공급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 업자에 대하여 기준가격과 전 력거래가격의 차액(이하 "발전 차액"이라 한다)을 「전기사업 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 기반기금에서 우선적으로 지원 한다.

## ③ (생 략)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발전 차액을 지원받은 <u>신·재생에너</u> <u>지</u> 발전사업자에게 결산재무제 표(決算財務諸表) 등 기준가격 설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u>채생</u>
에너지
<u> </u>
<u>생에너지</u>
◎ (원웨기 기 ○)
<ul><li>③ (현행과 같음)</li><li>④</li></ul>
<u> </u>
<u>재생에너지</u>

제18조(지원 중단 등) ① 산업통
상자원부장관은 발전차액을 지
원받은 <u>신·재생에너지</u> 발전사
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면 산업통상자원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고
를 하거나 시정을 명하고, 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전차액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1. • 2. (생략)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발전 차액을 지원받은 신·재생에너 지 발전사업자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전 차액을 환수(還收)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발전차액을 반환할 자가 30일 이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20조(<u>신·재생에너지</u> 기술의 저국제표준화 지원) ① 산업통상 자원부장관은 국내에서 개발되었거나 개발 중인 <u>신·재생에</u>

데18조(지원 중단 등) ①
재생에너지
 1.·2. (현행과 같음)
②
<u>재생에너지</u>
<u>,</u>
데20조( <u>재생에너지</u> 기술의 국제
표준화 지원) ①
2 2 2 3 3
<u>재생에너지</u>

너지 관련 기술이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제표준에 부합되도록 하기위하여 설비인증기관에 대하여표준화기반 구축, 국제활동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1조(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 ① 산업통 상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 진 설비 및 그 부품의 호환성 (互換性)을 높이기 위하여 그 설비 및 부품을 산업통상자원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공용화 품목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 중 공용화가 필요한 품목을 공용화 품목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 1. 제31조에 따른 신·재생에너

     지센터
  - 2.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 <u>재생에너지</u> 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 ①
<u>재생에너지</u>
·.
②
<u>재생에너지</u>
,
1 <u>재생에너지센</u>
<u>E</u>
2. (현행과 같음)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u>신·</u> <u>재생에너지</u> 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④ (생 략)

제23조의2(신·재생에너지 연료 전환의무 등) ① 산업통상자원 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고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이하 "혼합의무자"라 한다)에게일정 비율(이하 "혼합의무비율"이라 한다)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연료를 수송용연료에 혼합하게할 수 있다.

## ② (생 략)

제23조의4(관리기관의 지정) ① 7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혼합의 무자의 혼합의무비율 이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u> </u>	_ <u>\1\78</u>
에너지	
④ (현행과 같음)	
제23조의2( <u>재생에너지</u> 연료	혼합
의무 등) ①	
재생에너지의	
<u>재생에너지</u>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의4(관리기관의 지정)	1 -

الد ال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혼합의무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 1. 제31조에 따른 <u>신·재생에너</u> 지센터
- 2. (생략)
- ②·③ (생 략)

② (생략)

제26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 기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 산을 <u>신·재생에너지</u> 기술개발

1 <u>재생에너지센</u>
<u>터</u>
2.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25조(관련 통계의 작성 등) ①
재생에너지-
_ <del>., o , , , ,</del>
재생에너지의
<u>/1  0    0  /  0                        </u>
<u>재생에너지</u>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
대 등) ①
재생에너지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한다)를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 또는 처분할 수있다.

- ② (생 략)
- ③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제31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부터 신·재생에너 진 설비의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받는 등 운영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각각 10년 이내의기간에서 2회에 걸쳐 갱신할수있다.
- ④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

•
<u>재생에너지</u>
•
① /청체코 가 <b>ㅇ</b> \
② (현행과 같음)
③
<u>재</u>
<u>생에너지센터</u>
<u>재생에너지</u>
4

는 공유재산을 임차하거나 취득한 자가 임대일 또는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재산에서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환매할 수 있다.

#### ⑤ • ⑥ (생 략)

제27조(보급사업) ① 산업통상자 원부장관은 <u>신·재생에너지</u>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보급사업을 할 수 있 다.

- 1. (생략)
- 2. 환경친화적신·재생에너지집적화단지(集積化團地)및시범단지조성사업
- 3. (생략)
- 4. 실용화된 <u>신·재생에너지</u> 설 비의 보급을 지원하는 사업
- 5. 그 밖에 <u>신·재생에너지</u> 기 술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

<u>재생에너지</u>
  ⑤・⑥ (현행과 같음) 제27조(보급사업) ①
<u>재생에너지</u>
1. (현행과 같음) 2 <u>재생에너지</u>
 3. (현행과 같음) 4 <u>재생에너지</u>
<u>재생에너지</u>

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개발 된 <u>신·재생에너지</u> 설비가 설 비인증을 받거나 <u>신·재생에너</u> 지 기술의 국제표준화 또는 <u>신</u> ·재생에너지 설비와 그 부품 의 공용화가 이루어진 경우에 는 우선적으로 제1항에 따른 보급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환경 개선과 <u>신·재생에너지</u>의 보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협 조를 할 수 있다.
- 제28조(신·재생에너지 기술의 사업화) ① 산업통상자원부장 관은 자체 개발한 기술이나 제 10조에 따른 사업비를 받아 개 발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시 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 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생 략)
  - 2. <u>신·재생에너지</u> 기술의 개발 사업을 하여 정부가 취득한 산업재산권의 무상 양도
  - 3. 개발된 신ㆍ재생에너지 기술

②
<u>재생에너지</u>
<u>재생에너지</u>
<u>재생에너지</u> -
③
제28조( <u>재생에너지</u> 기술의 사업
화) ①
 1. (현행과 같음)
1. (현영과 실름) 2. <u>재생에너지</u>
3 <u>재생에너지</u>

- 의 교육 및 홍보
- 4. 그 밖에 개발된 <u>신·재생에</u> <u>너지</u>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산업 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지 위사업
- ② (생략)
- 제29조(재정상 조치 등) 정부는 제12조에 따라 권고를 받거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는 자, 신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하고 있는 자 또는 제13조에 따라 설비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금융상・세제상의 지원대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30조(신·재생에너지의 교육·홍보 및 전문인력 양성) ① 정부는 교육·홍보 등을 통하여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이용·보급에 관한 국민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u>신·</u> 재생에너지 분야 전문인력의

4	생에너지-
② (현행과 같음)	
제29조(재정상 조치 등)	
	<u>재</u>
<u>생에너지</u>	
<u>.</u>	
제30조( <u>재생에너지</u> 의 고	교육・홍보
및 전문인력 양성) ①	)
	<u>재생에</u>
너지	
	•
	_n ni
②	
에너지	

양성을 위하여 <u>신·재생에너지</u> 분야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 연구센터를 지정하여 육성·지 원할 수 있다.

제30조의2(신·재생에너지사업자 의 공제조합 가입 등) ① 신・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신ㆍ재 생에너지 연료사업자, 신ㆍ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기업, 신ㆍ재 생에너지 설비의 제조 · 수입 및 판매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신·재생에너지사업 자"라 한다)는 신ㆍ재생에너지 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필요한 사업(이하 "신·재생에 너지사업"이라 한다)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 산업 진흥법 | 제34조에 따른 공제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1. <u>신·재생에너지사업</u>에 따른 채무 또는 의무 이행에 필요 한 공제, 보증 및 자금의 융

<u>재생에너지</u>
제30조의2( <u>재생에너지사업자</u> 의
공제조합 가입 등) ① <u>재생에</u>
<u> 너지재생에너지</u> -
<u>재생에너지</u>
<u>재생에너지</u>
너지사업자재생에
너지
 개생에
 너지사업
②
1. 재생에너지사업

자

- 2. <u>신·재생에너지사업</u>의 수출 에 따른 공제 및 주거래은행 의 설정에 관한 보증
- 3. <u>신·재생에너지사업</u>의 대가 로 받은 어음의 할인
- 4. <u>신·재생에너지사업</u>에 필요
   한 기자재의 공동구매·조달
   알선 또는 공동위탁판매
   5. ~ 8. (생 략)
- ③ (생 략)

제30조의3(하자보수) ①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설치한 시공자 는 해당 설비에 대하여 성실하 게 무상으로 하자보수를 실시 하여야 하며 그 이행을 보증하 는 증서를 신·재생에너지 설 비의 소유자 또는 산업통상자 원부렁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 공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보수 에 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특별 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u>재생에너지사업</u>
3. <u>재생에너지사업</u>
4. <u>재생에너지사업</u>
5. ~ 8.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30조의3(하자보수) ① <u>재생에너</u>
<u> </u>
<u>재생에너지</u>

②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의	②
대상이 되는 <u>신·재생에너지</u>	<u>재생에너지</u>
설비 및 하자보수 기간 등은	
산업통상자원부렁으로 정한다.	
제30조의4( <u>신·재생에너지</u> 설비	제30조의4( <u>재생에너지</u> 설비에 대
에 대한 사후관리) ① <u>신·재</u>	한 사후관리) ① <u>재생에너지</u>
<u>생에너지</u> 보급사업의 시행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의 장(이하 이 조에서 "시행기	
관의 장"이라 한다)은 제2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된 <u>신ㆍ재생</u>	
<u>에너지</u> 설비 등 산업통상자원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u>신</u>	<u>재생에너지</u>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사후관리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2
따라 고시된 <u>신·재생에너지</u>	<u>재생에너지</u>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u>신·재생에너지</u>	<u>재생에너지</u>
설비의 시공자에게 해당 설비	
의 가동상태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고시된 <u>신·</u>	③ <u>재생</u>
재생에너지 설비의 시공자는	에너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실적을 시행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한다.

- ④·⑤ (생 략)
-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 항에 따라 센터로부터 보고받 은 <u>신·재생에너지</u> 설비에 대 한 사후관리 시행결과를 확정 한 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31조(신·재생에너지센터)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u>신·재</u>
  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을 전
  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기관에 <u>신·재생</u> 에너지센터를 두어 <u>신·재생에</u> 너지 분야에 관한 다음 각 호 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 1. 제11조제1항에 따른 <u>신·재</u> <u>생에너지</u>의 기술개발 및 이용 ·보급사업의 실시자에 대한 지원·관리
  - 2.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 른 신·재생에너지 이용의무

④·⑤ (현행과 같음)
6
<u>재생에너지</u>
<u>.</u>
제31조(신ㆍ재생에너지센터) ① -
채생에너
ス]
<del>_</del>
재생에너지센터-
<u>/1  0 1  2  / 1</u>
ر المال الما
1 <u>재생에</u>
<u> 너지</u>
2
<u>재생에너지</u>

- 의 이행에 관한 지원·관리 3. (생 략)
- 4. 제12조의5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의 이행에 관한 지원·관리
- 5. 6. (생략)
- 7. 이미 보급된 <u>신·재생에너지</u> 설비에 대한 기술지원
- 8. 제20조에 따른 <u>신·재생에너</u> <u>지</u> 기술의 국제표준화에 대한 지원·관리
- 9. 제21조에 따른 <u>신·재생에너</u> <u>지</u>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 에 관한 지원·관리
- 10. <u>신·재생에너지</u> 설비 설치기업에 대한 지원·관리
- 11. 제23조의2에 따른 <u>신·재생</u> <u>에너지</u> 연료 혼합의무의 이행 에 관한 지원·관리
- 12. (생략)
- 13. 제27조에 따른 <u>신·재생에</u> 너지 보급사업의 지원·관리
- 14. 제28조에 따른 신·재생에

   너지
   기술의 사업화에 관한

   지원·관리
- 15. (생략)
- 15의2.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3. (현행과 같음)
4 <u>재생에너</u>
<u> </u>
5. · 6. (현행과 같음)
7 <u>재생에너지</u>
8재생에너지
9 <u>재생에너지</u>
10. 재생에너지
개생에너
지
<u>-1</u>
12. (현행과 같음)
13 <u>재생에너지</u> -
14 <u>재생에너지</u> -
15. (현행과 같음)
15의2. <u>재생에너지</u>

효율적 사용에 관한 지원・관 리 16. • 17. (생략) 16. • 17. (현행과 같음) 18. 그 밖에 신ㆍ재생에너지의 18. ------재생에너지-----이용 • 보급 촉진을 위하여 필 요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 원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② • 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제3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제)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재생에너지-----5.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품질검 사 업무에 종사하는 품질검사

6. (현행과 같음)

기관의 임직원

6. (생략)